#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 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이정문・홍기원・박 정

이연희 • 이훈기 • 문금주

이학영 · 복기왕 · 문진석

서영석 · 김원이 · 이재관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.

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% 대로 미미한 수준임.

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 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,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,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신용카드, 직불카드,

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5조의2(보험료의 납부) 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「여신 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.
  - ② 보험회사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9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95조의2(보험료의 납부) ① 보
	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
	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
	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
	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
	<u>수 있다.</u>
	② 보험회사는 신용카드, 직불
	카드,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
	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
	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제20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	제204조(벌칙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	
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0. 제195조의2제2항을 위반한
	<u>자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